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928

제출연월일: 2022. 3. 24.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제4조)

나. 입법예고 기간(안 제5조)

다. 입법예고문 작성(안 제6조)

라. 입법예고 방법(안 제7조)

마. 의견제출 및 처리(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행정절차법」제41조 ~ 제43조

나.「법제업무 운영 규정」제20조

5. 참고자료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기재(여성가족과-11278호, 2022. 3. 10.)

라. 입법예고: 2022. 2. 14. ~ 3. 7.(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 또는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법 예고문)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
2. 자치법규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접수기관
5. 구 누리집 주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법예고 방법)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 하고자 할 경우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도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경우 자치법규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를 따른다.

⑤ 구청장은 입법예고안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비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징수 조례」별표 4를 준용하며, 요청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근 거 법 규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1.>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시행일: 2022. 7. 12.] 제42조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0.>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0. 10. 5.]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이 봉근

○ 연락처: (052)290-3091